

교육과정심의·개발위원회규정

제정 2009.06.01 1차 개정 2014.08.08
2차 개정 2017.03.01 3차 개정 2018.06.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송정보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소속 학과(부)의 교육 과정을 심의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당해 학과(부)의 교육 과정 개발을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육과정 심의 개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무) ①위원회는 본 대학 교직원과 외부 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3.1., 2018.6.1>

②위원장은 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집행한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17.3.1., 2018.6.1>

제4조(기능) 위원회는 총장이 부의하는 다음 각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대학 소속 학과(부)의 교육과정 심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본 대학 소속 학과(부)의 교육과정 제정 개편에 관한 사항
3. 본 대학 소속 학과(부)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의안발의) ①총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을 발의한다.

②교수, 학과(부)장 또는 위원이 의안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③총장은 보고된 의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총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위원장이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확정된다.

⑤회의에서 의결되어 총장이 승인한 교육과정은 해당 학과(부)의 교육과정으로 확정된다.

제7조(분과위원회, 연구위원회) ①총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또는 연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은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분과위원회 또는 연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결정한다.

③분과위원회 또는 연구위원회의 활동결과에 관하여는 총장이 결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에서 관장한다.

제9조(기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8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